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원대상에 국내유족 포함〉

■ 박상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483호)

2024. 11.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가. 제안자 : 박상혁의원 등 13인

나. 제안일 : 2024년 7월 8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7월 9일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외교적 노력으로 피해를 구제하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일제강점기 당시 국내에 가족을 두고 단신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사할린 현지에서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국내 거주 가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사할린동포가 사망하게 되면 생활 지원이 중단되는 등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내유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과 마찬가지로 국내유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이들의 정착 및 생활안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 및 국내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등).

III. 검토의견

개정안은 사할린 현지에서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국내거주 배우자 및 자녀도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할린동포법」’)의 지원대상¹⁾ 및 실태조사 대상의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3. “국내유족”이란 사할린에서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국내 거주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할린동포와 그 <u>동반가족</u> 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u>동반가족</u> 및 <u>국내유족</u> ----- ----- -----.
법률 제19997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의2(실태조사) 정부는 사할린동포과 그 <u>동반가족</u> 의 생활여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법률 제19997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의2(실태조사) ----- ----- <u>동반가족</u> 및 <u>국내유족</u> -----

1) 「사할린동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 16.>
1. “사할린동포”란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을 말한다.
2. “동반가족”이란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 등으로 인하여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동반가족으로 본다.

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① 정부는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정부는 사할린동포의 <u>동반가족</u>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등) ① 사할린동포와 그 <u>동반가족으로서</u>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제5조에 따른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외동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 -----. 제5조(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② ----- <u>동반가족 및 국내유족</u>에----- -----. 제6조(<u>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등</u>) ① ----- -----<u>동반가족 및 국내유족으로서</u>----- ----- -----. ②·③ (현행과 같음)
--	---

사할린동포의 지원은 1992년 최초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이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 사할린동포의 권익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한 「사할린동포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2007년까지는 사할린동포 1세만이 영주귀국 사업 대상이었으나, 2008년부터 사업확대로 사할린동포 1세의 배우자 및 장애 자녀도 포함하였음.

2020년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동반가족에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까지 포함하여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다가, 법 개정을 통해 2024년 7월부터는 사할린동포의 자녀 전체가 동반가족으로 영주귀국이 가능해 짐.

현행법에 따라 영주귀국자에게는 항공료 등을 1인당 185만원, 임대보증금²⁾을 2인 1가구당 1,770만원을 지원하고, 특별생계비³⁾로 매월 1인당 75,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밖에 정착지원대상자에게 복지급여를 지원하고 있음.⁴⁾

개정안은 사할린에서 사망한 사할린동포⁵⁾의 국내 거주 배우자 및 자녀(이하 ‘국내유족’이라 함)도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 대상에도 포함시키려는 것임. 일제강점기 당시 국내에 가족을 두고 단신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현지에서 사망한 사할린 동포의 국내 거주 가족에게도 임대주택 및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급여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사할린 동포의 국내유족을 지원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사할린동포법」은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의 피해를 구

2) 임대보증금은 사할린동포 사망시 환수함.

3)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지원하는 아파트 관리비

4) <사할린동포 정착지원 현황>

○ 특별생계비: 매월 1인당 75,000원 지원

○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2인 1가구 기준 17,700,000원

○ 복지 급여 지원

-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복지 급여를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범위 특례에 따라 선정 시 해당 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수령

- 소득평가액(소득만 산정) 산정 후 급여 결정

- 특별생계비(국민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는 소득으로 미산정

5) 1990년 이후 2024. 7월 현재 까지 3,800여 명의 사할린동포 1세가 영주귀국 하였음. 사할린에서 강제동원되어 사망한 사람, 사망자별 국내 유족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한 현황은 없음.

제하고 그 동포와 동반가족의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⁶⁾을 고려할 때 국내유족에 대한 지원은 동 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한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사할린동포 등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⁷⁾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⁸⁾ 동 법에 따라 다른 과거사 피해자⁹⁾들의 경우 생존 피해자 본인에 한정하여 노령·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매년 80만원의 의료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가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되면 희생자 1명당 2천만원의 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국내유족에게만

6) 「사할린동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그 피해를 구제하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7)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유족의 범위 등)에는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를 유족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8)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위로금) 국가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한다.

1.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1명당 2천만원[「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2685호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로 제정되어 법률 제3615호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폐지법률로 폐지된 법률을 말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희생자 1명당 234만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1명당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9)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8조제6호에 따라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
- 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항제4호나 이 법 제8조제3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 다.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의 경우는 1938년 4월 1일부터 1990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생활안정을 위하여 복지급여를 지급할 경우 다른 과거사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강제동원피해자의 국내 유족에 대한 지원을 동 법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임.¹⁰⁾

문 의 처
02)6788-5263

10)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2023년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할린동포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 당시 관계부
처에서 동 법의 대상에 국내 유족을 포함하는 것은 법 취지 및 여타 과거사 피해자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
는 이유로 반대하여 논의 과정에서 해당 내용은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 된 바 있음.